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 안 번 호	23-151
------------	--------

제출년월일 : 2023.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필요성

- 조리 부담 및 높은 식자재값, 시설적 제약 등으로 인해 현장조리를 통한 효도밥상 제공 확대 어려움
- 마포 전 지역에 효도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찬공장 조성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 추진이 반드시 필요
- 보다 적극적인 효도밥상 사업의 확대 추진 및 구민의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마포복지재단의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필요

나. 무상사용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무상사용 면적
망원빗물펌프장 내 관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0-3 내 일부	246.19m ²

※ 기존 94.57m² → 246.19m²로 증축 후 전체 면적 사용

- 다. 사용기관 : 마포복지재단(마포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라. 사용용도 : 효도밥상 반찬공장(조리실, 식자재실, 전처리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마. 사용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바.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면제’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4년 효도밥상 확대계획 】

- 사업대상: 결식우려 있는 75세이상 (독거)어르신 1,500명
 - 기존 급식기관(경로식당, 일반식당) 효도밥상 지속 운영: 17개소, 500명
 -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 실시: 1,000명(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 사업주체: 마포구, 마포복지재단(급식관리지원센터,반찬공장 운영 등)
- 주요내용
 - 75세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무료중식 제공
 - 일상까지 케어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안부확인 및 건강·법률·세무상담
 -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급식으로 효도밥상 확대(급식기관 및 이용자 추가)
- 운영형태(반찬공장)
 - 반찬공장에서 배송한 반찬·국 배식 및 식사(밥은 현장취사)
 - 운영인력 : 영양사1명, 조리원 및 조리보조원 3~5명, 운전원 2~3명

참고자료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협약서

-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운영 협약서
(마포구-마포복지재단)

불 임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불 임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운영 협약서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와 마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 보고, 협약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추진되는 효도밥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명칭,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 사업내용 : 효도밥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4. 1 ~ 2023. 12. 31
- 지원금액 : 금333,630천원(금삼억삼천삼백육십삼만원)

※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은 향후 예산규모 등 사업제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함

제3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마포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마포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
- 급식제공기관 급식관리, 식단관리,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담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에 관한 사항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및 시행)

- ① “재단”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포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마포구"와 "재단"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③ "마포구"는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제공 수행기관 및 급식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정책을 강구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 ① "재단"은 사업비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을 "마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지원 금액은 사업계획과 같이 「75세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며, "재단"은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예산의 사용)

- ① "재단"은 "마포구"가 지급한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4조의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마포구"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 ① "재단"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마포구"로부터 관계서류 열람, 현장확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재단"은 "마포구"에게 인건비 및 예산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마포구"가 정한 서식에 따라 매분기 10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단"의 의무)

- ① "재단"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재단"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마포구"가 정한 예치계좌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자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구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마포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사업추진 결과 제출)

- ① "재단"은 "마포구"가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마포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 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마포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재단"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따라야 하며, "재단"이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포구"는 지원 부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마포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마포구"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재단"이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재단"이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재단"이 이 사업을 하도급 할 때
4. "재단"이 "마포구"의 지도·감독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을 때
5. "재단"이 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면 "재단"은 그 해지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마포구"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마포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석 등)

- ①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마포구”와 “재단”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재단”이 실시하는 인력 투입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상호간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합의가 없는 한 이 협약서의 효력은 계속된다.
- ②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마포구”와 “재단”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마포구청장 박강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이홍주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4길
50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